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8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문대림・허성무・윤준병

임호선 · 김영호 · 김한규

김 윤ㆍ이병진ㆍ서삼석

송옥주 · 임오경 · 김재원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 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한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 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제11조(업무) ①
호의 업무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u><신 설></u>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
조사 및 연구	<u>3</u>
	_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